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1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
문성호, 박강산, 박유진,
박철성, 서상열, 우형찬,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
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사업은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,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종료된 사업임.
- 그러나 현행 조례의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, 조례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.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현행화에 따라 종료된 사업을 삭제함(안 제36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시민큐레이터 운영</u></p>	<p>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문서번호

2023101000000004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아이수루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0.

회신일 : 2023.10.1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제2호 시민큐레이터 운영을 삭제하여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이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개정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